

1. 개정이유

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,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환자유인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기준 상향(2개월→6개월)

나.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인터넷상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
자격정지 신설(3개월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가목20)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“2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6)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	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8호	자격정지 3개월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